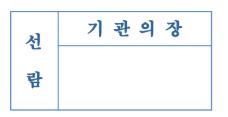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

제564호 2018. 07. 19.(목)

공 고

○ 사천시 공고 제84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-----2

회					
람					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/ ☎ 831-2217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564호(2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8 - 842호

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8. 7. 19.

사 천 시 장

1. 공 고 명 칭: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
2. 공 고 기 간: 2018. 7. 19. ~ 2018. 8. 3.(15일간)

3. 공 고 대 상

	신청대상 자동	रे	운행정지	운행정지 사유	
등록번호	차명	소유자	명령일자		
40누9037	모닝	배*정	2018. 7. 12.	소유자요청(불명 자 운행)	
03저4343	투스카니	OMAR			
14오1156	카렌스LPG	OMAR MUHTAR BN	2018. 7. 12.	소유자요청(불명자 운행)	
09〒5388	투스카니 (TUSCANI)	SENNO			

4. 공 고 내 용

1)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 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,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

제564호(3)

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

- 2) 자동차 사용자*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(벌칙)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(벌칙)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.
- * 자동차 사용자 :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.
 - 3)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(055-831-337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